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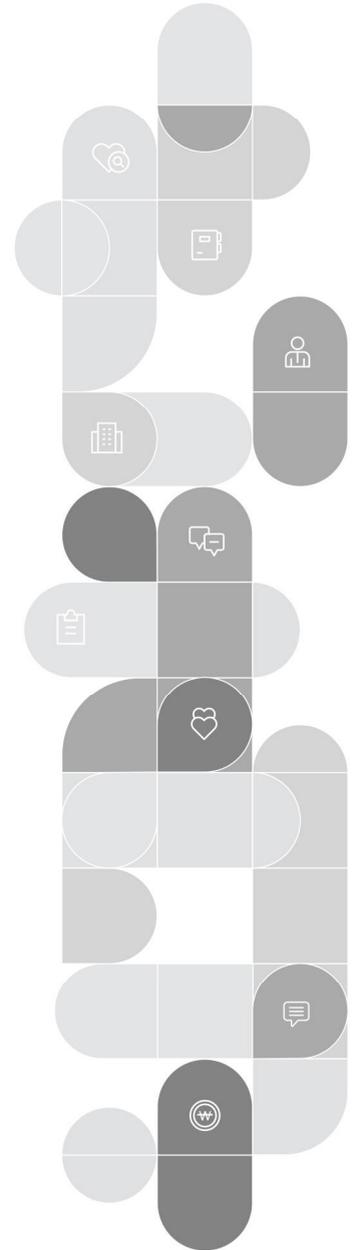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846-10

www.mohw.go.kr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목 차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01 *Chapter

사업개요 ▶ 1

- I. 사업 개요 3
- II. 사업 운영방식 4

02 *Chapter

청년사업단의 구성 및 협약체결 ▶ 11

- I. 청년사업단의 구성 13
- II. 협약의 체결 16
- III. 협약의 변경 및 해지 17

03 *Chapter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 및 교육 ▶ 19

- I. 제공인력 선발 및 관리 21
- II. 제공인력 등 교육 24

04 *Chapter

예산의 배정 및 집행 ▶ 25

- I. 예산 지원 방식 27
- II. 사업비 관리 및 집행 28
- III. 항목별 사업비 편성 기준 29
- IV. 사업비 정산 31



05 *Chapter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33

I. 대상자 선정 기준	35
II. 대상자 선정 절차	35
III. 대상자별 서비스 지원기간	37
IV.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38
V. 서비스 제공	40
VI. 서비스 제공인력의 의무	43
VII. 사업계획 변경	44
VIII. 자료 보존	45

06 *Chapter

성과관리 ▶ 47

I. 사업 실적 보고	49
II. 지도·점검	50
III. 사업단 선정 취소	51
IV. 성과평가 실시	53

07 *Chapter

[부록] 서 식 ▶ 55

본 지침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개별 지침 및 해석에 따름

또한 바우처사업(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참여에 따라 각 사업의 지침*을 준수함

*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시 해당)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자체개발 서비스 제공 시 해당)

01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제1장

사업개요

사업 개요 I

사업 운영방식 II

I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 운영 근거

- 「청년기본법」제8조 및 제9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과제(4-2-2-2. 청년층 건강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23.3~12월 (10개월)
- **사업대상:** 17개 시도별 1~4개, 30개 사업단
- **총사업예산: 15.13억원(국비기준)**
 - * 지자체 보조(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 인건비
 - * 6,300만원(월 6,800천원×10개월)
 - (행정인력) 월 2,500천원(주40시간×4주)×10개월
 - (수퍼바이저) 월 3,800천원(주40시간×4주)×10개월
 - 설치비 : 홍보비, 교육비, 간접비, 4대보험료 등 초기 설치비 지원
 - * 900만원(사업단별/1회)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4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기대 효과

-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일자리 제공 및 역량강화**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II 사업 운영방식

■ 공모방식

- 사업단이 청년의 신체건강, 정신건강 증진 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을 신청, 시도는 접수된 건에 대해 1차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 복지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22년 우수사업단은 결격사유 등 없을 경우 지원 시 당연 선정, '22년 하반기 현장점검 시 인력 기준 또는 근로시간 미충족 사업단은 후 순위 대상, 야간서비스 제공 우대

■ 사업단 선정 절차

- 보건복지부는 사업공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각 시·도는 참여기관 발굴
 - * 사업계획 공고(복지부) → 참여기관 발굴(시·도) → 참여기관 신청 → 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시·도) → 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시·도)
 - '22년 성과평가결과 우수사업단* 중 계속 참여를 희망하고 시·도에서도 적합하다고 통보된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로 제출 → 결격사유 등 없을 경우 당연 선정
 - * 부산, 인천, 대전 2개, 세종, 제주
 - 그 밖에 야간시간대(18시~22시) 서비스제공 사업단 우대, '22년 하반기 현장 점검 시 인력/근로시간 미충족 사업단 후순위 관리, '23년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사업단은 채용인력 다수일 경우 가점 부여
 - 공모 진행 시·도는 제출된 참여 신청기관의 결격 사유 확인 등 1차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시·도별 1~4개씩 총 30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각 시·도에 회신(~'23.3월 중)
 - * 보건복지부, 외부전문가, 청년으로 구성
- 각 시·도는 선정된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 사업단은 인력 채용 후 중앙지원단 기초 소양교육 실시('23.3월~)

■ 서비스 제공 주체

- 지역별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단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만 19~34세의 청년층(지자체 조례 및 청년 인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자체개발서비스는 별도 마련)

■ 서비스 수혜 대상: 각 서비스별 대상 기준 적용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만 19~34세 청년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만 19~34세 청년
 - * 지자체 조례 및 지역수요에 따라 변동가능
- (초등돌봄서비스) 초등학교를 둔 보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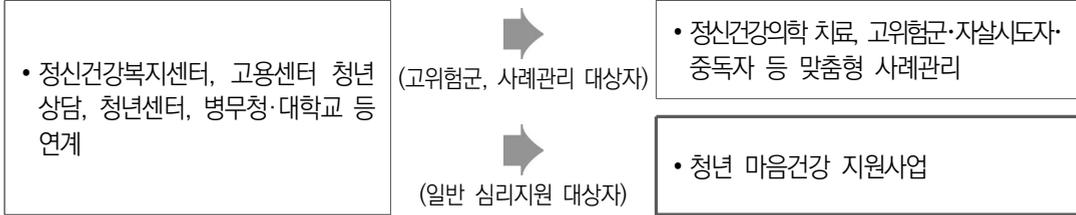
■ 사업 분야

- 아래 사회서비스 유형 중 선택
 - 사업단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구분	정신건강	신체건강	초등돌봄	자체개발
사업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붙임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단 한해 시범 참여)		
		청년신체건강증진 서비스(붙임2)	초등돌봄서비스 (붙임3)	자체개발서비스

붙임 1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

■ 전국 청년 대상 3개월(10회기) 간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 * 우선지원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종료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 (서비스내용) 사전·사후검사, 3개월(10회기)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서비스 대상자 중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서비스가격) 월 24만원(A) 또는 28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 우선순위 1순위는 전액 지원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23.상반기 예정)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내 용								
① 목적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만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1) 서비스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서비스 내용</th> <th style="width: 25%;">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 서비스</td> <td>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td> <td>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1:3 주3회 (회당 70분) </td> </tr> <tr> <td>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td> <td> 1:4 주3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p>2) 서비스 제공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1:3 주3회 (회당 70분)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1:4 주3회 (회당 9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1:3 주3회 (회당 70분)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1:4 주3회 (회당 90분)							
⑥ 집단규모	1:1-1:4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23 신규)

항목	내 용															
① 목적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응,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B유형 서비스에 한해 장애아동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포함) 															
③ 제공기관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등록기관 ▶ 제공인력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④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가격 : A형 월 24만원, B형 월 26만4천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은 서비스 선택하여 등록(학습지원, 동행지원) - 이용자는 서비스 유형 선택하여 신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회당 이용시간</th> <th>회당 가격(원)</th> <th>횟수</th> <th>2인기준 가격(원)</th> </tr> </thead> <tbody> <tr> <td>A. 학습지원(1:1)</td> <td>2시간</td> <td>30,000</td> <td>40회(월8회)</td> <td>40,000원(월6회)</td> </tr> <tr> <td>B. 동행지원(1:1)</td> <td>1시간 이내</td> <td>11,000</td> <td>120회(월24회)</td> <td>16,500원(월16회)</td> </tr> </tbody> </table>	구분	1회당 이용시간	회당 가격(원)	횟수	2인기준 가격(원)	A. 학습지원(1:1)	2시간	30,000	40회(월8회)	40,000원(월6회)	B. 동행지원(1:1)	1시간 이내	11,000	120회(월24회)	16,500원(월16회)
	구분	1회당 이용시간	회당 가격(원)	횟수	2인기준 가격(원)											
	A. 학습지원(1:1)	2시간	30,000	40회(월8회)	40,000원(월6회)											
B. 동행지원(1:1)	1시간 이내	11,000	120회(월24회)	16,500원(월16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득 기준</th> <th>본인부담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기초수급자 및 차상위</td> <td>서비스 금액의 5%</td> </tr> <tr> <td>기준 중위소득 80% 이하</td> <td>서비스 금액의 10%</td> </tr> <tr> <td>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td> <td>서비스 금액의 20%</td> </tr> <tr> <td>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td> <td>서비스 금액의 40%</td> </tr> <tr> <td>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td> <td>서비스 금액의 70%</td> </tr> <tr> <td>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td> <td>서비스 금액의 100%</td> </tr> </tbody> </table>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서비스별 선택하여 구체화, 재가 방문형(이동 포함) 서비스 제공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학습지원</td> <td>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td> </tr> <tr> <td>동행지원</td> <td>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동행지원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구분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동행지원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 3단계 : 서비스 제공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아동안전 확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제출(필요 시 아동 관련 성범죄 경력 조회 가능)

■ 사업 추진 절차

진행절차	주 체	주요 내용
사업 공고	보건복지부	사업 공고
↓	↓	
계획서 제출	지자체 및 대학,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사업계획서 작성 (서비스 세부내용, 채용인원 등)
↓	↓	
계획서 심의	시·도	사업계획서 1차 자체심의 * 바우처사업 예산 고려하여 심의선정
↓	↓	
사업 신청	시·도	사업계획서 제출
↓	↓	
계획서 심사	보건복지부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	↓	
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사업단 선정 후 시·도 통보
↓	↓	
사업 협약	시·도 및 사업단	사업시행 시·도와 사업단간 사업 협약체결
↓	↓	
사업 개시	사업단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교육 및 기관등록, 이용자모집, 사업개시
↓	↓	
사업 모니터링	시·도,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문제점 보완 및 시행과정 지원

■ 사업 추진 체계

<p>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사업단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각 시도별 사업단 최종 선정 • 사업단 운영지침 마련 • 성과 평가
<p>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별 사업계획서 접수·심의 및 복지부 제출 • 사업단과 사업 홍보,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 예산 관리(인건비 예산 지급, 사업비 정산 등) • 사업단 운영상황 정기적 모니터링, 현장점검 • 사업단 성과관리
<p>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인력 채용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사업수행(서비스 대상자 모집·홍보) • 사업비 신청·정산 등 사업 운영예산 관리 • 지자체에 정기적 사업수행 결과보고
<p>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이하 "중앙지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인력 교육 및 사업단 교육 점검, 대외홍보 • 사회서비스사업단 컨설팅 총괄 • 청년사업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실적 관리 지원, 현장점검 지원 등
<p>지역사회서비스 지역지원단 (이하 "지역지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단 사업 관리 지원 (청년사업단 인력 교육, 컨설팅, 현장점검 지원, 사업실적 관리지원 등) • 사업단 성과평가 지원

02

제2장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청년사업단의 구성 및 협약체결

청년사업단의 구성 I

협약의 체결 II

협약의 변경 및 해지 III

■ 사업단 참여 자격 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행
 -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도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져야 함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명, 사업비 배분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 사업단의 명칭

- “지역명 ○○○ 청년사업단”으로 사용
 - 사업단 명칭은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업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명칭 사용
 - * 예시: 부산 00 청년사업단, 전남 00 청년사업단 등

■ 사업단의 구성

- 사업단은 사업 수행조직으로서 사업단장 1,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 서비스 제공인력 최소 4인 이상으로 구성 (사업단장은 제공인력 인원에서 제외)
 - 사업단장을 제외한 채용인력 중 70%는 청년으로 채용
 - * (슈퍼바이저 제도 운영) 청년 제공인력의 멘토 역할로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인건비를 지원, 만 55세 미만으로 제공인력 경력요건의 2배이상(최소2년) 충족하는 자를 채용
 - 행정인력 및 슈퍼바이저는 주 40시간 원칙이나, 주 40시간 근로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주 20시간 2명으로 대체하여 채용 가능하며 매월 정기통계 작성 시 명시
 - 제공인력은 1인당 주 40시간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인력 채용하되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초등돌봄서비스는 근로시간 의무 적용 없으나 10인 이상 채용하여 규모화 도모
 - *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상 인건비 외 추가 수당 지급 가능

■ 구성원별 주요 역할

- 사업단장: 사업운영 총괄

사업단장의 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단장에서 배제 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연구참여 제한 조치 중인 교수
 - ② 단과대학 학장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
 - * 단,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경우 단과대학 학장 이상의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도 사업단장 수행 가능
 - ③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중에 있는 교수

사업단장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 기타 기관
 - 기관장(이사장, 대표자) 또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원칙으로 함
 - *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중 선임
 - 횡령 등 기관운영 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자는 사업단장에서 배제

- 행정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관리
 - 대상자 모집 및 사업 홍보
 - 서비스 이용관련 민원응대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회계 관리
 - 기타 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서비스 개발 참여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슈퍼바이저
 - 제공인력에 대한 역량 지원 등 멘토 역할
 - 기관의 서비스 수퍼비전 제시
 - 서비스 관련 민원응대
 - 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전반적 사항
 - 단장의 서비스 운영 총괄 지원
 - 연간 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관리

II 협약의 체결

■ 협약의 목적

- 지자체와 사업단간의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역할 및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 수행 유도

■ 협약의 당사자

- 지자체: 시·도지사
- 사업단: 참여기관장(대학 총장,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
* 컨소시엄 참여 기관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전체가 협약에 참여
컨소시엄 기관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는 p.13 참조

■ 협약의 내용

- 지자체는 선정된 사업단과 <서식 제6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기
 - ① 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 ② 사업계획 및 목표(제공인력 및 서비스 대상자 수 명기)
 - ③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④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⑤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단은 협약 시 채용, 이용자모집, 서비스내용 등 구체적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

■ 협약 체결: 사업단 선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

III

협약의 변경 및 해지

■ 협약의 변경

- 다음 사유 발생 시 시·도지사는 협약 내용 변경 가능
 - ① 사업단으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 * 사업단이 사업목표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단 소속 기관장 명의의 변경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로 변경 신청
 - ②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사업 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협약의 해지

- 시·도지사의 사업 점검 및 평가 결과 사업단이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 가능
 - 시·도지사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 후 시행
- 시·도지사는 협약 해지 시 해당 사업단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 소속 기관의 장은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된 국고금 집행 잔액(이자 포함)을 반납
- 시·도지사가 반납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

03

제3장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서비스 제공인력 선발 및 교육

제공인력 선발 및 관리 I

제공인력 등 교육 II

I 제공인력 선발 및 관리

■ 선발 대상

- 전체 채용인력의 70% 이상은 **만19~34세이하*** 청년을 채용
 - 참여하는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 지자체 조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배제 대상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배제 대상 미적용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 선발 방법

- 채용인력의 모집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별로 바우처 사업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
 - 제공인력 모집공고는 워크넷*(고용노동부), 참여기관 홈페이지, 관할 시·도 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
 - * 모집공고는 접수 마감일 10일 전까지 워크넷에 등록하여야 함
 - 신청·접수는 사업단에서 진행
 - 제공인력 선발 시 서류심사 후 면접 등을 통해 사업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9.7.1)

- (목적) 채용 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이며
 -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일명 “채용절차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9.7.1)

- (수집금지)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정도,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 (벌칙규정) ①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의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금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자세한 사항은 「'19년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고용노동부)」 참조

■ 임금 및 근로조건

- 채용된 인력은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업단 소속 기관의 대표 (대학 총장,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등)과 임금, 계약기간,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
 - * 행정인력, 수퍼바이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예산상 인건비 기준 준수하되 추가 수당 지급가능, 근로계약 기간은 3월~12월까지 최대 10개월
 -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일수는 근로시간 비례, 예시: 4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익월에 4h 유급휴가 발생)를 주어야 하며, 미부여시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
 - ** <서식 제7호>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
 - 이용자 특성,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인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간 외 근로(예시: 18~22시) 운영 가능
 - 사업단장은 계약서 작성 시 채용인력별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관

* <서식 제8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제공인력의 급여는 **매월 개인별 통장에 입금 처리**
- 사업단장은 채용인력의 근로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
 -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4대 보험 가입 필수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배상보험·상해보험 등 가입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 기준

구분	보험별 가입제외 대상
국민연금	- 1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3개월이상 계속 근로제공시 가입)
건강보험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대상임 (적용제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제공인력 관리

- 사업단은 채용인력의 관리를 위해 근무자 명부, 임금대장 등을 작성·관리
 -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제공인력별 서비스 제공 여부는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판단
- 사업단은 신규 인력 선발 후 채용인력 정보를 시·도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에 별도 제출

[제출서식]

연번	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공분야	자격증 등

※ 구분 :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기재

■ 부적격자 관리 등

- 사업단, 지자체는 부적격자 모니터링 실시
 - 자격기준, 연령 등
 - 부적격자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참여 중단 등 필요한 조치 실시

II

제공인력 등 교육

■ 목적

- 참여 청년에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양 및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총 20시간 실시(중앙지원단 12시간, 자체교육* 8시간)
 - * 자체교육은 지역지원단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중앙지원단) 사업단 전체 인력에 대해 바우처 사업별 요구되는 의무교육을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에서 실시(신규기관 12시간, 단 전년도 참여 사업단은 8시간 이수)
 - * 교육 관련 세부 계획 별도 통보 예정
- (자체교육) 사업단별 자체 제공인력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 * 슈퍼바이저 또는 외부강사를 통해 최소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 수립
- (지역지원단) 지역지원단 등을 통한 제공인력 수시 교육 실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교육보고 및 관리

- 사업단은 연간 교육실시 후 결과를 관할 시·도에 보고하고, 출석부 및 지출관련 회계 서류 등을 보관
- 시·도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은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등 모니터링
 - * 사업단 점검 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교육 실시 여부 등 점검

04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제4장

예산의 배정 및 집행

예산 지원 방식 I

사업비 관리 및 집행 II

항목별 사업비 편성 기준 III

사업비 정산 IV

I

예산 지원 방식

■ 예산 배정

- 사업예산: **15.13억원**(22년 대비 0.17억원 증, 국비 기준으로 사업비의 70% 수준)
 - 사업단별 7,200만원(인건비 6,300만원, 설치비 900만원)
- 지원방식: 지자체 경상보조(서울 50%, 지방 70% 매칭)

사업비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 “인건비”는 청년사업단 소속으로 신규 채용되어 사업단 행정처리 업무를 위한 행정인력과 멘토링 역할의 수퍼바이저에게 지급되는 급여
- “설치비”는 제공인력 교육비, 홍보 등 사업단 초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

■ 사업비 지원 방식

- 시·도는 사업단 선정·업무협약 이후 사업초기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3월은1/2 범위 내에서 사업비 선지급 가능, 이후 매월(또는 분기별) 사업비 지급

■ 사업비의 청구 및 지급

- 사업단은 관할 시도로 매월 사업비(또는 분기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는 사업단별 매월(또는 분기별) 사업비를 교부
 - 사업단은 청구 월 15일까지 관할 시도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는 20일까지 사업비를 교부
 - * 사업단은 사업비 교부신청 시(매월 또는 분기별) 관할 시도에 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 제9호),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서(서식 제10호)를 제출하고, 단, 매월 사업실적보고서(서식 제11호)는 매월 시도 및 지원단에 제출해야 함
 - ** 사업비 청구 시 사업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단, 국립기관, 정부출연법인 제외)

II

사업비 관리 및 집행

■ 사업비 관리

- 사업단별로 **사업비는 참여기관**(대학,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참여기관(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회계 내에 별도 계정으로 관리**
- 법인명의로 별도 통장으로 사업비 관리
 - 사업단은 시·도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는 통장과 사업비를 집행하는 통장이 일치되도록 관리
 - 바우처 수익 입금 및 지출 통장을 별도 개설·관리

■ 사업비의 집행

-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 사업단은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와 협약 시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서** <서식 제10호>를 제출
- 사업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사용 금지**
 -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업비 집행 불가
 - * 사업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등 조치
 -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는 집행 불가
 -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를 변경 집행할 경우 사전에 관할 시도에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신청서 <서식 제12호>를 제출하고 시도의 승인 후 집행

III

항목별 사업비 편성 기준

■ 항목별 사업비 편성 기준

- 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
- 사업단은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와 협약 시 **연간 사업비 집행계획서** <서식 제10호>를 제출

■ 인건비 집행

- 인건비는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 급여로 구성
 - 반드시 해당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 운영비의 편성 및 집행

- ① 홍보비, ② 여비, ③ 법정부담금, ④ 간접비, ⑤ 운영경비, ⑥ 임차비, ⑦ 기타 비용 (교육비 등) 등으로 편성 가능

① **홍보비**는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서비스 대상자 모집, 사업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

*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등 유인물 제작, 홈페이지 구축,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의 용도로 사용

② **여비**는 사업참여 인력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국내 출장비 편성

* 사업수행 관련 교육 및 회의참석 등과 관련해 집행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③ **법정부담금**은 4대 보험 등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편성

④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등 기관(대학, 복지관 등) 내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운영비의 2% 이내**에서 편성

⑤ **운영경비**는 수용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

* 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에 사용

** 업무추진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집행 시 반드시 법인카드(클린 카드)를 사용

⑥ **임차비**는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

* 단, 기관 내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비 편성 불가

⑦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편성

* 보증보험증권은 사업기관이 해당 시도에 사업비 청구 시 제출(국립기관, 정부출연법인은 제외)

*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면서 협력기관에 사업수행 경비 지출(예시: 실습장소·장비 임차비용, 재료비 구입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출 가능

IV

사업비 정산

■ 정산의 범위

- 정산은 사업종료 후 실시('24.1월 중), 사업단 교부금 대상(바우처 수익 제외)
* 시·도 담당자는 “e-나라도움” 교육 이수 필요

■ 정산 절차

- 사업단은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고, 시도가 지정한 계좌로 사업비 잔액과 이자를 반납('24. 1월 중)
 - 정산 시 사업비 다음의 서류를 제출
 - ①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1부 <서식 제14호>
 - ②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사본
 - * 원인행위 관련 공문, 구입 및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③ 사업비 통장사본
- 시·도는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내에 확정된 정산결과를 사업단에 통보('24. 2월 중)
- 시·도의 정산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환수액 등 차액 반납('24. 2월중)
 - * 사업비 환수분이 발생한 경우 사업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단의 경우 주관기관이 1차적으로 사업비를 반납
- '24. 2월말까지 시·도는 정산 완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 사업단은 관할 시·도에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시·도는 국비 집행 잔액과 이자를 보건복지부로 반납

■ 정산 시 주의 사항

- 사업비의 별도 계정 및 별도 통장관리 여부
 -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한 사업비 중앙관리 여부 확인

- 항목별 집행 내역의 적정성
 - 사업비가 협약 시 제출된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계획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업비 이체계좌 확인
 - * 인건비, 여비를 제외한 사업운영 관련 비용이 사업 참여 인력의 계좌로 이체된 경우 전액 환수 등 조치
- 정산 관련 서류 관리의 적정성
 - 집행 내역별 정산 관련 서류 구비 여부 확인 후 통장, 회계장부, 지출원인 행위, 지출결의서, 영수증(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집행일자, 금액 등의 상호 일치 여부 확인
 - * 관련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집행일자 및 금액이 불일치 할 경우 집행계획 위반 여부 조사 후 환수 등 조치

05

제5장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기준 I

대상자 선정 절차 II

대상자별 서비스 지원기간 III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IV

서비스 제공 V

서비스 제공인력의 의무 VI

사업계획 변경 VII

자료 보존 VIII

I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선정 기준

- 서비스별 대상자 기준 적용
 - * (청년마음건강) 만19~34세
 - * (청년신체건강) 만19~34세 * 지자체 조례나 여건에 따라 연령 변동 가능
 - * (초등돌봄서비스)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
- 초등돌봄서비스는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

II

대상자 선정 절차

■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별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선정 절차에 따름
 - 다만, 사업단의 이용자 모집계획에 따라 사업단은 시·도와 함께 홍보·모집 협력 추진
 - 시·군·구에서 홈페이지 모집 안내 및 대상자 선정·통보

〈 서비스 신청절차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23. 3월이후 온라인(복지로) 신청 가능(별도 안내 예정)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제출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			
소득 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 - 소득조사는 초등돌봄서비스 및 자체개발서비스에 한함
↓			
이용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매월 27일 18:00까지)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대상제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상황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직권으로 재신청가능
↓			
통 지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선정 이후 관리

- 시·도에서는 최종 대상자를 사업단에 통보하고 각각 1부씩 명부 보관

III

대상자별 서비스 지원기간

■ 개인별 서비스 유효기간

- 개인별 서비스 유효기간은 사업기간 내에서 서비스 개시일부터 대상자 지원기간 만료일까지임
 - * 사업운영 기간: '23.3월(사업단 선정 후 협약체결일)~'23.12.31.
 - 서비스 개시일: 사업단에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날
 - 대상자 지원기간: 서비스별 상이
 -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별 재판정 기준 충족 시 재신청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연장 가능
- 사업기간 내 지원 원칙
 - 선정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이 종료되는 '23.12.31.까지만 지원
 - * 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본 사업과 별도로 지속 지원 가능

IV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등

■ 개인정보 보호 의무

- 사업단, 시도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 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관련 정책 분석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업무상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처리할 수 없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 관리 인력

- 사업단 내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인력을 배치

* 사업단장을 포함한 청년사업단 참여 인력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서식 제8호)를 관할 시·도로 제출

■ 위반 시 조치

-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사업단 선정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예시

-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공공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에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활동하는 행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절차 (표준안)



■ 서비스 제공 준비

- 사업단은 서비스 개시 전 시도와 협약 등 사전 준비 실시
 - 시도와 협약, 참여 청년 모집 및 교육, 사업 홍보, 서비스 대상자 모집, 협력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기관등록 및 바우처결제를 위한 준비 등
 - * (근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제공인력 현황(경력 등), 시설 현황 등을 '사회서비스전자 바우처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개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내용, 일정 등을 결정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 사업단과 이용자 또는 가족 등 대리인과의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등을 명시
 - * 바우처 사업별 안내 지침(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내 서식 활용

■ 제공인력 정보 관리

- 서비스 제공인력은 채용 시 자격증, 경력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고 (증명서 등 입증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함
- 제공인력 관련 정보 현황 자료는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시·도 및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후 입력 및 변동사항 매월 입력 필요)

■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
 - (서비스내용) 신체건강, 정신건강, 초등돌봄서비스, 자체개발서비스 중 택1
 - (제공방식) 각 분야별 바우처사업에 참여

구분	정신건강	신체건강	초등돌봄	자체개발
사업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단 한해 시범 참여)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자체개발서비스

* 사업단이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각 바우처사업 지침(「2023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을 주로 적용하게 되므로 사업수행 시 반드시 참조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기관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카드로 결제하고 가격의 10%는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 단, 초등돌봄서비스 및 자체개발 등 신규서비스는 본인부담금 비율을 아래표 적용

구분	소득기준	본인부담 비율
초등돌봄 서비스, 자체개발 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 **(성과지표)** 분야별 공통된 성과지표 측정방법 도입하여 운영(필요시 추가 지표 선정 가능,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통 지표 도입이 어려운 경우 시·도 사전 협의를 거쳐 유사지표 활용) ※ 가능한 한 객관적 지표 선정
 - * (신체건강)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측정을 통한 서비스 성과측정
 - * (정신건강) 우울증 측정(BDI) 또는 스트레스 측정(PSS) 중 선택
- **(제공기록지 작성)**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고, 제공한 전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기록
 - * 바우처 사업별 안내 지침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준하는 사업단의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활용 가능

■ 서비스 모니터링

- 사업단장은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상황 등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 실시 및 모니터링 결과 작성
 - 제공인력별 사회서비스 제공일시, 서비스 내용, 이용자의견 등 확인

■ 서비스 종료

- 개인별 서비스 유효기간 종료 시 서비스가 종료되며, 서비스 유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사업기간이 종료될 경우 서비스 종료
 - * 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본 사업과 별도로 지속 지원 가능
- 사업단장은 종료 14일 전에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 사유 통지

VI

서비스 제공인력의 의무

■ 서비스 제공인력의 의무

- 이용자 및 가족의 요구 등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제공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 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변화 등으로 서비스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실시
- 이용자가 욕구 및 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 서비스 제공 시 방문일시, 방문시간, 제공한 서비스 내용,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
- 미흡한 내용의 서비스 제공, 이용자 학대, 성희롱, 성폭행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정해진 서비스 외에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강요 시 사업단 보고, 사업단은 관할 시도에 보고
- 서비스 제공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Ⅶ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시·도에서 예외적으로 변경 허용

* 주요 내용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 처리 절차

- 각 사업단은 시·도에 사업변경 계획 신청
- 각 시·도는 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 변경 승인 여부 통보

* 예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4장 II.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참고

Ⅷ

자료 보존

■ 자료보존

- 사업단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자료의 성격, 중요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보존자료 및 기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에 따른 보존 자료: 5년〉

-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 (보존자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예시)
 - 사업단 운영에 관한 서류(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협약서, 사업 실적 보고서 등)
 - 사업비에 관한 서류(선지급금 교부 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사업비 교부 신청서, 사업비 집행 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비 집행 실적보고서 등)
 - 제공인력에 관한 서류(제공인력 채용 시 자격 확인 자료, 제공인력 근로계약,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 등(이하 참조), 제공인력 교육 및 사후관리 관련 자료 등)
 -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서류(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결정통지서,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보존 자료 : 3년〉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보존자료) 제공인력 근로계약,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 등
- (예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등

〈그 외 보존 권장 자료: 1년〉

- 기타 통계, 보고, 운영에 관한 서류
- 기타 중요도가 낮은 기관 자체 생산자료 등

06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제6장

성과관리

사업 실적 보고 I

지도·점검 II

사업단 선정 취소 III

성과평가 실시 IV



I

사업 실적 보고

■ 사업 추진 실적 관리

- 사업단은 매월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시·도 및 중앙지원단, 지역지원단에 보고*

* <서식 제11호> 작성

- 시·도는 사업단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실적이 미진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 시·도는 사업단으로부터 사업추진 실적(서식 제13호, 14호)을 보고 받아 보건복지부에 제출
(정기보고: 연 2회, 6월말, 12월말)

-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단을 통해 사업운영 컨설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실적이 미진한 사업단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 등을 권고

II 지도·점검

■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단은 각 사업단에 대해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실시
 - (정기점검) 사업기간 중 반기별 현장점검* 실시
 - * 점검반 구성: 보건복지부, 시·도,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단 등
 - (수시점검) 시·도(지역지원단 협조)는 수시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사업단은 점검을 위한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장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점검 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
 - ①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이행 여부
 - ② 사업비 집행 등 관리 현황
 - ③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여부
 - ④ 사업비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⑤ 제공인력 등 근태, 교육 관리 적정성 여부
- 점검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업단은 관할 시도 및 지역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는 협약의 변경·해지 등 조치

III

사업단 선정 취소

■ 선정 취소사유

-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① 사업단 선정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허위 증빙 제출 등
 - ②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이 발생한 경우
 - ③ 사업비를 부당 청구한 경우
 - 사업단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사업비를 청구한 경우
 - 채용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근무실적 등을 조작하여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
 - ④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중요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를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
 - ⑤ 기타 시·도지사가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 사업단 선정 취소절차

- 시·도는 사업단 선정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 관련 내용을 조사, 증빙 자료, 시도 참고의견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취소 요청
- 보건복지부는 사업단 선정 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단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시·도에 통보
 - *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개최
 - 컨소시엄 기관의 경우 선정 취소 사유가 일부 협력 기관에 한정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있는 협력 기관에 대해서만 취소 가능
 - * 취소 사유가 기존 사업단에 채용된 인력에 의한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고용승계 원칙

■ 사후조치

- 선정이 취소된 사업단 소속 기관(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지원된 사업비 집행 잔액(이자 포함)을 시도에 반납해야 함
 - 단, 사업단 선정 취소 조건의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반납하여야 함
 - ③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허위 청구는 바우처사업 관련 환수조치
- 선정이 취소된 사업단은 다음 월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사업의 종료를 통보
- 사업단 재선정은 보건복지부와 시·도간 협의를 거쳐 사업단 선정 심사 시 후순위로 탈락된 사업단 가운데 지정
 - * 2순위 사업단의 사정 등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순위 사업단 선정 가능
 - ** 시·도지사는 후 순위 선정 사업단이 기존 사업단의 사업계획 변경을 희망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인력구성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후 순위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

IV

성과평가 실시

■ 성과 지표

- 평가기간: '23.3~10월(8개월)
- 평가주체: 보건복지부, 시·도, 중앙사회서비스원, 외부 전문가 등
- 평가시기: '23.11월말(세부일정 추후 통보)
- 평가항목별 점수(100점): 평가지표별 세부 기준은 별도 시달 예정('23.상반기)

(참고) '22년도 평가기준('23년 평가기준은 추후 의견수렴 후 확정)

① 사업관리(30점)

- * 사업비 집행실적(20점): 서비스제공기간(5점), 사업운영비 대비 자체예산 투입 비율(5점), 사업비 집행률(10점)
- * 성과목표(10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성과 목표 달성 정도(10점)
- * 감점(건당 -3점, 최고 -15점): 예산 부정집행시

② 인력관리(30점)

- * 인력채용(30점): 주 40시간 근로 준수 비율(10점), 채용인력비율(10점)
- * 교육(10점): 제공인력 교육 평균 이수시간(5점)
- * 슈퍼바이저(5점): 멘토링 역할에 충실한 정도(5점)

③ 서비스 관리(30점)

- * 서비스 개발(10점):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5점)
- * 이용자수(15점): 사업단별 목표대비 이용자수 달성도(10점), 바우처 이용자 비율(5점)
- * 사업운영(10점): 홍보와 유관기관 협력노력(5점), 장애요인 극복사례 또는 우수사례(5점)

④ 성과관리(10점)

- * 중앙지원단 실시 만족도 조사(5점), 자체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개선방안 도출(5점)

■ 우수사업단 선정·포상 등

- 성과평가 결과 상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우수사업단 선정 및 정부포상 실시
 - * 우수사업단 및 포상 규모는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 개최시기: '23.12월(세부일정 추후 통보)
- 대 상: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인센티브
 - 우수사업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사업단 당연 선정 및 우수사례 언론홍보 실시

참 고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현황**



(기준 : 2023.1.29.)

중앙지원단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중앙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이정은 주임	02-2271-9073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9층 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지원단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김현호 대리	051-714-20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150-3) 시청역 롯데골드로드 6층
대구광역시	장정인 팀장	053-219-0020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13층
인천광역시	맹혜정 팀장	032-721-69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13층
광주광역시	오봉희 대리	062-716*241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8층 광주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	김하나 대리	042-331-8920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3층 대전사회서비스원
울산광역시	최선민 주임	052-243-480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8-18, 럭키빌딩 3층
세종특별자치시	최명진 팀장	044-850-818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경기도	이가희 주임	031-271-922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건강증진센터 1층
강원도	함혜영 팀장	033-248-5721	강원 춘천시 외솔길 25, 2층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충청북도	나윤정 팀장	043-220-116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충청남도	김현중 차장	041-330-245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1층 101호, 충남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라북도	정주애 팀장	063-906-40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05 6층 전북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	손병일 팀장	061-287-824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01호
경상북도	김성애 팀장	054-710-8850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155 부속동 2층
경상남도	조영이 실장	070-4756-647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경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	곽현지 주임	064-722-70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제주사회서비스원 2층

07

2023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부 록

서식



★ 서 식

구 분	순 서	참고자료명	페이지
사업단 선정 및 협약	서식 제1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58
	서식 제2호	사업계획 요약서	59
	서식 제3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계획서	60
	서식 제4호	참여기관 사업신청서	66
	서식 제5호	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	67
	서식 제6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서	71
제공인력 채용·관리	서식 제7호	근로계약서(표준안)	73
	서식 제8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75
사업비 교부 등	서식 제9호	사업비 교부 신청서	76
	서식 제10호	연간사업비 집행계획서	77
	서식 제11호	매월 사업실적보고서	79
	서식 제12호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신청서	80
정기실적 보고	서식 제13호	사업 실적 보고서	81
	서식 제14호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82
이용자 관련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84

[서식 제1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신청 시도				
사업명				
주관부서	()국 ()과(팀)	주소		
(협조부서)	()국 ()과(팀)			
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E-mail)	
시·도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천원
<p>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00시장·도지사 (인)</p>				

*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는 공란처리

*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서식 제2호]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사업단명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 사업 개요	사업명	청년마음건강/청년신체건강/초등돌봄/자체개발(사업명) 중 택1			
	사업목적				
	사업기간	서비스 개시 월			
	사업비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 (B)	기타(C)
2.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자체개발의 경우 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행정인력			
수퍼바이저					
3. 지원 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예상 대상자 수(계획인원/전체사업기간)		
4.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서식 제3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계획서

지역명 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예시)

I. 사업 개요

①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② 서비스 제공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③ 서비스 제공 인력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④ 서비스 대상(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자 모집 방법

〈별첨1〉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서

⑤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산출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자체개발 서비스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2〉 설치비 산출내역서

〈별첨3〉 현금·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⑥ 자체성과 지표(서비스별로 1~2가지 작성)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①			
②			
③			

II. 기관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① 기관선정 필요사유

○

② 참여기관의 전문성

○

③ 사업관리 방안(모니터링 계획 등)

○

④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서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서			
사업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추진계획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별첨 2] 설치비 산출내역

설치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산출내역

- 홍보비 :
- 교육비 :
- 간접비 :
- 운영경비 :
- 기타비용 :

[세부내역]

항목	산출내역	총액(천원)	1인당(천원)	비율	비고
합 계				100%	
홍보비					
교육비					
기타					
....					
....					

[별첨 3] 현금·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현금·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 현금 : 천원
-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 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제5호] 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

참여기관 주요 사업 실적 (3년간)

※ 사회서비스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 명 :

연번	①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관련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 사업참여 기관

○ 사업명칭: “시도명 ○○○ 청년사업단”으로 사용

-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재

* 예시 : 부산 00 청년사업단, 전남 00 청년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내용

○ 서비스명 기재

- 단, 자체개발 사업의 경우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제공인력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훈련 계획서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목표집단> 000명 (모집단의 0.0%)	<모집단> 00도 관내 15~39세 청년층 0000명
----------------------------------	--	--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방법

-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수요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모집방안 강구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협약서 <별첨 3>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서비스 만족도, 개선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신체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정신건강 부분은 우울증(BDI) 또는 스트레스(PSS) 측정 중 택 1(필수)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복지부 보고(익일 5일 한)
- 시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서식 제6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협약서

- 사업명 :
- 사업단명 :
- 협약 기간 :
- 협약 사업비(정부지원금) : 백만원(연간)
- 협약 당사자
 - 지자체 : ○○○시·도지사
 - 참여기관 :
 - 사업단장 : (소속) (직위) (성명)

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이하 '사업단')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협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계획)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참여기관이 제출한 별첨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의 수행) 협약 당사자는 **관계 법령,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 (사업비) 시·도지사는 참여기관장 등 사업비 중앙관리 기관에 정부지원금을 교부한다. 정부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방식은 운영지침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목표) 사업단은 사업신청서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제공관련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관리) 사업단은 ‘운영지침’ 및 시·도지사가 정한 규정·지침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시·도지사는 참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시·도지사는 사업단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해석) 본 협약 및 ‘운영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성명 (인)

참여기관명 소속 직위 성명 (인)

시도명○○청년사업단장 성명 (인)

별첨 1. 사업계획서

※ 시·도지사는 상기 협약서식 및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 제7호] 근로계약서(표준안)

(1면)

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23년 0월 0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10개월)
2. 근무 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주 40시간)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 시 분 시 분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 주휴일 : 매주__요일

5. 임 금

- 월급 : _____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연간사업비 집행계획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계(A+B+C)											
인건비	인건비(A)										
	인건비(B)										
설치비	교육비										
	홍보비										
	기타비용										
	소계(c)										

()월 사업비 집행계획서

(단위: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월 신청	신청 누계	잔액
계(A+B)					
인건비	인건비(A)				
	인건비(B)				
설치비	교육비				
	홍보비				
	기타비용				
	소계(c)				

* 사업비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서 별도 첨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사업단명		(시도+사업명)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기관명			
제공인력 (서비스제공자)	제공인력 인원(누계)		제공인력 당월(현원)		퇴사 인원		1인당 월평균임금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당월	누계		
	명	명	명	명	명	명	천원	
대상자내용 (서비스수혜자)		계획인원(연간)			이용자 수(누계) 실적		평균만족도 (5점 만점)	
		연간(중복제거*)		연간(누적)	연간(중복제거*)			
	명	명	명	명	명	명	점	
제공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당월 이용자수(중복포함)		월 제공시간	비고 (제공장소 등 특이사항 작성)		
			당월	누계 (~12월까지 누계)				
	ex. 초등돌봄	서비스명(프로그램 내용)		명	명	시간		
		서비스명(프로그램 내용)		명	명	시간		
		서비스명(프로그램 내용)		명	명	시간		
기타	서비스명(프로그램 내용)		명	명	시간			
예산집행 현황	총 사업비①		인건비 집행실적		설치비 집행실적		잔액 (①-②-③)	누계 집행률(% (②+③)/① * 100
			당월	누계②	당월	누계③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보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장			(인)			보고담당자		(인)

[서식 제12호]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신청서

사업명	
사업단명	

1. 사업 변경 개요

-
-

2. 사업 변경사유

-
-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별로 간략히 작성

3. 예산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예산	변경(증감)	변경 후 예산 (예산 현액)	변경 후 예산 향후 집행액
총계					
인건비	인건비(A)				
	인건비(B)				
설치비	교육비				
	홍보비				
	기타비용				
	소계(C)				

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단명:

사업추진 기간:

서비스 내용

- 신체건강 개선 분야
- 마음건강 개선 분야
- 초등돌봄 사회서비스 분야
- 자체개발서비스 분야

참여인원

- 제공인력: 자격, 전공 및 분야별 참여인원 등
- 서비스 이용대상: 선정방법, 분야별 이용자 수 등

자체 성과지표 달성여부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①			
②			
③			

기타

※ 사업단별로 사업추진 상 특이사항 기재

[서식 제14호]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사업단명	
------	--

I. 정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교부액(A)			집행액(B)			불용액(A-B)		
계									
인건비									

II. 사업비 집행내역

1. 사업별(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총계								
인건비	인건비(A)								
	인건비(B)								
설치비	교육비								
	홍보비								
	기타비용								
	소계(C)								

2. 사업비 불용액 내역

(단위 : 천원)

비목별	세목별	불용액	불용사유
계			

* 불용사유 : 계획변경 및 취소, 사업포기, 집행잔액 등 기재

3. 이자 및 수익금 내역

(단위 : 원)

구분	내역	비고
이 자		
수익금		
소 계		

* 정부지원금 이자는 반납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채용 관련 통계,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 기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통계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채용 관련 통계, 만족도조사 및 각종 안내문 기타 부처나 지자체 정책 및 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연구,조사)	성명, 연령, 성별, 연락처 등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사회서비스원(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서비스 제공 관련 관리·감독, 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지원·평가, 서비스 부정수급 확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 기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통계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보유자료	보유·이용기간
채용 시 자격 확인 자료, 근로계약, 임금 지급 등 관련 서류 등, 교육 및 사후관리 등 자료, 고용, 해고, 퇴직 관련 서류 등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서명)

20 년 월 일

OO시·도지사, 지역명OO청년사업단장 귀하